

도시관리계획(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삼양특별계획구역5
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(안) 주민열람 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-308호(1996.11.8.)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118호(2006.4.6.) 및 제2023-527호(2023.11.30.)로 재정비한 우리구 삼양사거리 일대 「도시관리계획(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안)」에 대하여 「삼양특별계획구역5 세부개발계획 결정(안)」 주민제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「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의견청취를 실시하고자 합니다.
2.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 등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7월 23일

강 북 구 청 장

가. 열람사유 : 주민제안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

나. 공 고 일 : 2026. 7. 23.(목)

다. 열람기간 :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5일간(2026.08.07.까지)

라. 열람장소 :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도시계획과(☎02-901-6872)

마.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

1)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: 생략(열람도서와 같음)

2)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: 생략(열람도서와 같음)

3)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조서

가)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 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삼양특별계획구역Ⅲ	미아동 703-17일대	10,222.5	-	10,222.5	서울특별시고시 제308호 (1996.11.13.)	세부개발 계획수립 (2020.11.)
기정	삼양특별계획구역4	미아동 703-13 일대	2,007	-	2,007	서울특별시고시 제347호 (2023.08.17.)	역세권 활성화 사업
신설	삼양특별계획구역5	미아동 698-1 일대	-	증) 9,560	9,560		
기정	삼양특별계획가능구역1	미아동 688-5 일대	5,097	-	5,097	-	-
기정	삼양특별계획가능구역2	미아동 688-4일대	2,346	-	2,346	-	-
기정	삼양특별계획가능구역5	미아동 703-73 일대	1,788	-	1,788	-	-
기정	삼양특별계획가능구역6	미아동 734-233 일대	3,450	-	3,450	-	-
기정	삼양특별계획가능구역7	미아동 734-241 일대	5,045	-	5,045	-	-

나).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분	구역명	면적(㎡)	변경사유
신설	삼양특별계획구역5	9,560	• 우이신설선(삼양사거리역) 개통에 따른 신규역세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제안을 반영하여 특별계획구역 신설

※ 기타 세부구역의 범위, 지구단위계획, 결정조서 등은 붙임문서(요약) 및 열람장소 등 비치도서와 같음

바. 삼양특별계획구역5 세부개발계획: 생략(열람도서와 같음)

사. 관계도면 : 게재생략(붙임 및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)

아. 의견제출 : 서울도시공간포털(<https://urban.seoul.go.kr>), 강북구 도시계획과 서면제출 및 전자메일(mepi@gangbuk.go.kr)

※ 강북구 홈페이지→분야별정보→주택→지구단위계획→기타 관련자료(주민열람 등)에서도 확인 가능